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

안양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권기대
전화 031-470-4422 / 팩스 031-470-4273

보도자료

2021. 1. 28.(목)

제 목

3개월 영아 학대 친부모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※ 2021. 1. 19~20.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금일(1. 28.)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(부장검사 강석철)는 3개월 된 친딸을 학대하여 두개골 등 11개 부위 골절, 영양결핍, 탈수 등의 중상해를 가하고,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임한 친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,
- 그와 같은 친모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부를 아동유기·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사경에 대한 보완 수사지휘, 유전자감정, 법의학감정, 통합심리 분석 등 실시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음
- 한편,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친부모들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청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음

1

피고인 및 피해아동

- 피고인 A○○, 친모 [구속], B○○, 친부 [불구속]
- 피해아동 C○○ [당시 생후 3개월, 친자(차녀), 현재 보육원 재원]
※ 장녀(D○○, 현재 5세)는 수사과정에서 분리, 현재 보육원 재원

2

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 A

- '19. 8. ~ 9.경 피해아동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, 발목을 잡아 양쪽으로 세게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두개골 등 11개 부위의 골절, 영양결핍, 탈수 등의 중상해를 가함 [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(아동학대중상해)]

② 피고인 A, B

-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, 피고인들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임함
[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

3

주요 수사경과

- '20. 2. 28. 군포경찰서, A, B 아동보호사건¹⁾ 의견으로 송치
- '20. 3. 4. 검찰, 보완수사 지휘²⁾

1)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접근제한, 보호관찰, 사회봉사·수강명령,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이루어짐
2)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,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하고,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호사건 송치는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의견을 재검토하도록 지휘

- '20. 6. 1. 군포경찰서, 보완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
- '21. 1. 14. 검찰, A 구속(B 기각)
- '21. 1. 28. 검찰, A 구속 기소, B 불구속 기소

검찰은 송치 받은 후 **유전자 검사**(유전적 원인에 의한 골절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피고인들의 변명이 사실이 아님을 밝힘), **법의학 감정**(구체적인 폭행 등 학대방법을 확인), **통합심리 분석**(친부의 행동분석, 심리상태 확인) 등 각종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행 실체를 명확히 하여 친모를 구속하였고, 학대사실을 부인하던 **친모는 구속 후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백하였음**

※ 사경 단계에서,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들 면담, 피해아동의 언니 조사, 피해아동에 대한 의무기록 등 압수, 피고인들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상당 부분 수사 진척이 이루어졌고, 신고직후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언니가 피고인들과 바로 분리되어 현재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

4 수사 결과

- 친모는 생후 3개월 된 친딸의 팔 부위를 발로 밟고, 발목을 잡아 양쪽으로 찢거나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11개 부위의 골절, 영양결핍, 탈수 등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(**중상해**), 상해를 입은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함(**아동유기방임**)
- 친부는 친모가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방임함(**아동유기방임**)

- 범행동기는 주위의 도움 없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,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피해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됨

5

피해아동 등에 대한 보호·지원대책 마련

●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('21. 1. 22.)

- 대학병원 의사,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, 보호시설 담당직원, 피해아동의 국선 변호사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피해아동의 당시 상태, 현재 상태, 치료 및 양육 방향을 확인하고,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함
-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언니에 대하여도 치료비 등 제반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함
- 참석자들은 피해아동은 물론 피해아동의 언니에 대하여도 학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권상실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

● 친권상실신고 청구

- (피해아동) 친부모 모두에 대하여 친권상실신고의 청구를 하였고,
- (피해아동의 언니) 직접적인 학대 피해자는 아니지만,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아 정상적인 양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친부모 모두에 대하여 친권상실신고의 청구를 하였음

-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음 ☑